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403

발의연월일: 2024. 12. 11.

발 의 자:정성호·황명선·민병덕

소병훈 • 박홍근 • 문대림

서영교 · 채현일 · 추미애

윤호중ㆍ이병진ㆍ천하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고, 비상계엄시에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과사법기관만을 지휘·감독할 뿐 국회의 활동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되는 무장병력을 국회 본청에 투입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계엄 해제의 요구를 위한 국회의 정치활동과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도록하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제외한 이들의 국회 경내 출입에 관하

여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상조치수단인 계엄권 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등). 법률 제 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제13조의2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국회의 정치활동 보장)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계 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정치활동과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 경내 출입(국회의원이 계엄 해제의 요 구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 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13조(국회의 정치활동 보장)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
	령과 계엄사령관은 계엄이 선
	포된 경우에도 헌법 제77조제5
	항에 따른 계엄해제 요구를 위
	한 국회의 정치활동과 국회의
	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
	<u> 여야 한다.</u>
	②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
	경내 출입(국회의원이 계엄 해
	제의 요구와 관련하여 출입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국회의
	<u>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u>
제13조 (생략)	<u>제13조의2</u> (현행 제13조와 같음)